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75
----------	-----

2016. 10. 14.(금)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정영수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6년 09월 27일

다. 회부일자: 2016년 09월 28일

라. 상정일자: 2016년 10월 10일

(제351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홍창 의원)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체계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2) 대안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3) 대안교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가. 본 조례안은 공립대안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립대안학교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에 목적을 둔 것으로,

나. 우리 사회에서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고, 청소년 우울과 불안,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고위험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다. 기존의 획일적 체제의 학교가 아닌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으로 현행 학교교육의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하는 공립대안학교 운영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라. 충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적 효과 창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은 이번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립대안학교”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에 적합한 교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안교육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2.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 운영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교육감은 제5조의 대안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2.3.21.]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慮)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3.10.30.>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8.2.>

1.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동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10.30.]

##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내용

-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예산 추계

## 2. 비용추계

-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916,93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청명학생교육원 운영 예산이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이에 맞춰 추계된 예산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안교육사업 교육공무직인건비	356,823	360,000	365,000	370,000	375,000
대안교육사업비	346,659	346,659	346,659	346,659	346,659
교육비특별회계	213,454	213,454	213,454	213,454	213,454
계	916,936	920,113	925,113	930,113	935,113

- ## 3. 작성자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전병성 (290-2265)